규제영향분석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안) -

<목 차>

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시험의 참여제한
2.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 내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이름	강형석
	담당부서(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송경희		연락처	044-202-6334
	과장	박준국		이메일	@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시험의 참여제한</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9조제5항</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제2항</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SW진흥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 소프트웨어역량평가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 간 응시를 제한함</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 소프트웨어역량평가 응시자</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 소프트웨어역량평가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소프트웨어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td></tr>
<tr><td rowspan="2">규제의
적정성</td><td>10. 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td><td colspan="3">○ (비용) 전체 응시자 중 등록된 부정행위자를 찾아내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므로 비용부담은 없음
○ (편익) 부정행위 감소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 (결론)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판단됨</td></tr>
<tr><td>11.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r>
<tr><td></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 rowspan="3">기타</td><td>12.일몰설정 여부</td><td colspan="3">미설정</td></tr>
<tr><td>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3">해당없음</td></tr>
<tr><td>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td><td>적용여부</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td><td>미적용</td><td></td><td></td><td></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이하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는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의 내용·일시·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결과는 무효로 하며, 해당 응시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에 응시하거나 역량평가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⑦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의 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SW진흥법은 이전의 SW산업 진흥법과는 달리 국가 전반의 SW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선언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일반 국민들의 SW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SW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육성이 필요함

- SW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SW역량평가가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 시 부정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것 외에, 해당 부정행위자에게 일정기간(3년)의 응시제한의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함

- (검토 대안) 부정행위로 얻은 해당 평가결과의 무효처리만으로는 지속적인 부정행위 시도가 가능하므로 부정행위의 유인동기를 감소시키고 SW역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어려움

- (참고입법례) 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9조제1항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특이사항은 없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SW역량평가 응시예정자	-	

3. 규제 목표

- SW역량평가에서의 부정행위 근절을 통한 SW역량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일반적으로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따른 평가결과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3년의 응시제한은 국가기술자격법,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등 관련 입법례와 동일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아니며, 시장기능에 대한 개입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SW역량평가가 실시되는 한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므로 5년 또는 일정 범위의 존속기한 설정이 부적합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해당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므로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유사한 입법례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방개혁법 관련 국방부령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이 있음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 또는 교육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비용편익 분석

비용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제목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시험의 참여제한
분석	ㅇ (비용) 전체 응시자 중 부정행위자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므로 비용부담은 없음 ㅇ (편익) 부정행위 감소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ㅇ (결론)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판단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간 응시제한 제재는 일반적인 평가시험 규정과 동일하므로 준수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o 규제 차등화 방안

- 단일한 제재규정이므로 규제차등화는 어려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SW역량평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SW역량지수와 동일한 것으로, 현재에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내부규정에 따라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집행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적인 문제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17년 8월 시작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작업 과정에서 국가적인 SW역량 강화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으며, SW진흥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 신설되어 SW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후속 입법이 필요

○ ‘20. 2. ~ 3. : 시행령 초안 내부 검토회의

○ ’20. 6.30. ~ 7.14. : 시행령 관련 SW산업 관계자 의견수렴

○ ’20. 9.1~10.12 :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매년 SW역량평가와 관련하여 응시자, MOU체결기관들(대학, 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ICT/SW 기술 및 산업 동향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등을 개선하여 나갈 계획임

3. 종합결론

- SW역량평가는 국민의 SW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SW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역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 간 응시제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 목표와 수단의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하며, 국내 타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 간의 응시제한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 내용</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제2항</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계약당사자 간 분쟁 방지 또는 조속한 해결을 통해 국내 SW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그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등 분쟁이 빈번한 사항에 대해 합의내용을 서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함</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당사자(발주자, 수주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단체</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기업 간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계약서가 현장에서 활용·확산되어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방지 또는 최소화 하거나 조속한 해결을 기대</td></tr>
<tr><td rowspan="3">규제의 적정성</td><td>10. 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td><td colspan="3">○ (비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체크하는 정도이므로 비용증가는 없음
○ (편익) 공정하고 합의된 서면 계약서의 내용과 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소송 등의 분쟁 시에도 서면 계약서를 토대로 빠른 해결이 가능함
○ (결론) 따라서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판단됨</td></tr>
<tr><td rowspan="2">11.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 rowspan="3">기타</td><td>12.일몰설정 여부</td><td colspan="3">미설정</td></tr>
<tr><td>13.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3">해당없음</td></tr>
<tr><td rowspan="2">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td><td>적용여부</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미적용</td><td></td><td></td><td></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제1호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물가, 인건비 변동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지체상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활용, 보호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내외 SW시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산업 및 정보통신 융합의 가속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당면한 제4차산업 혁명시대에서도 SW는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분야 SW사업의 경우 공통계약사항을 담고 있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이 지속적으로 개정·개선됨에 따라 계약서 자체의 충실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국내 SW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분야의 경우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각종 불공정 계약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민간 기업 간에도 보다 합리적이고 공통된 거래원칙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통해 SW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시) 누락된 요구사항에 대한 대가없는 개발, 경미한 하자에도 준공대금 미지급, 대금입금 지연 시 지연이자 누락 등

- 특히, 외부감사 대상의 SW기업 중 소송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공정하고 충실한 SW사업 계약서 확산이 향후 SW시장 내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거나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외부감사 대상 SW기업 소송현황>

(단위: 건, 만원, %)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CAGR
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	533	559	621	633	670	743	779	648.3	6.5%
유 소송 기업 수	89	112	129	136	136	138	145	126.4	8.5%
전체 소송 건수	253	293	372	384	448	412	486	378.3	11.5%
전체평균소송건수	0.5	0.5	0.6	0.6	0.7	0.6	0.6	0.6	
유소송기업 평균소송건수	2.8	2.6	2.9	2.8	3.3	3.0	3.4	3.0	
전체평균소송가액	111,482	101,871	87,830	146,670	168,198	246,983	321,876	169,273	19.3%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SW사업 중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SW개발·구축 사업은 도급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선택함

- (검토 대안) SW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SW사업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권장만으로 국내 SW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음

- (참고입법례)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SW사업 수요자(발주자 및 수주자),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협회 등) 등은 모두 계약서 내의 필수 기재사항 신설에 이의 없음

- 입법예고 이후 수정·보완 필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SW사업자	- 과업내용의 확정, 변경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필요함	반영
SW수요자	- 지체상금, 위약금 등 손해배상과 하자 판단방법에 관한 조항이 필요 -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이 필요함	반영
관계 기관 협의	- 상동	

3. 규제 목표

- SW사업의 계약 관행 선진화, SW사업 분쟁의 감소 및 신속한 해결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SW사업의 계약 관행 선진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SW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분쟁 요인에 대해 이해관계자 상호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계약서 작성이 가장 효과적임

- SW사업 계약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수행 및 계약문화 확산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필수 기재사항 의무화는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규제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 판매/영업
② 규제 방식		☞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 정성모델
	판단근거	☞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후속 입법
④ 대상 업종		☞ SW산업
⑤ 예비분석내용		o SW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들은 SW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120.12.10.시행) 제38조를 준수해야 함 - (제1항)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함 - (제2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함

	ㅇ 이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서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 있음 ㅇ SW진흥법 제38조제2항의 취지 상 SW사업의 계약당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차등화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등화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⑥ 차등화 적용 여부	☞ 차등화 미적용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진입 제한 또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아니며, SW 사업 당사자 간에 중요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통해 쌍방 모두 안정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시장 기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 SW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는 SW산업 내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것이며, SW산업이 존속하는 한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므로 5년 또는 일정 범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부적합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제로 포괄적 개념정의보다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제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제로 금지행위를 명시하기 어려우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계약체결 시점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제로 평가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해 SW진흥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과 미국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계약(토지 양도 및 매매계약, 보증계약 등)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서를 법률상 의무화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서면 계약서 교부 외에 필수기재사항을 도입한 유사한 입법례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이 있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⑤ (생략)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비용편익 분석

- 비용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제목	SW사업의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의 비용편익 분석
분석	ㅇ (비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체크하는 정도이므로 비용증가는 없음 ㅇ (편익) 서면 계약서의 공정하게 합의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며, 소송 등의 분쟁도 서면 계약서에 토대하여 빠른 해결이 가능함 ㅇ (결론) 따라서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판단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SW업계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정도이며, SW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은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득이므로 준수 가능성은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명확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인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을 통해 접수된 위반사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 중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17년 8월 시작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작업 과정에서 공공 SW시장 외에 민간 SW시장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SW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이 신설되었고, 제38조제2항에 명시된 SW사업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2019년 SW사업 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SW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연구」에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제30조를 입안하였음

○ ’19. 7. ~ 12. : SW사업 불공정 계약관행 조사 실시

○ ‘20. 2. ~ 3. : 시행령 초안 내부 검토회의

○ ’20. 6.30. ~ 7.14. : 시행령 관련 SW산업 관계자 의견수렴

○ ’20. 9.01~10.12 :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실시되는 SW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SW사업의 계약관행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필수기재사항의 추가, 변경 등의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3. 종합결론

- SW사업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SW사업의 계약당사자들 간에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한 서면합의를 유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계약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은 거의 없고 계약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규제가 아니며,
- 민간 SW사업 계약관행의 선진화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됨